

9.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

2005. 9. 1 제정
 2006. 9. 1 개정
 2008. 3. 1 개정
 2009. 9. 1 개정
 2010. 3. 1 개정
 2011. 3. 1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1 일부개정
 <대학원행정실>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의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각종 교외 장학단체나 교외인사 등이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 제 3 조 (지급자 및 수혜금액) ①교내 각종 장학금의 수급자수와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②제2조의 기관(단체, 개인 등)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은 수급자 및 금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제 4 조 (지급대상 등) 교내외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당해학기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2014. 3. 1.>
- 제 5 조 (종류)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4. 3. 1.>
1. 안암연계 및 졸업특대생 장학금
 2. 외국인장학금
 3. 일반장학금
 4. 조교장학금
 5. 근로장학금
 6. 안암학사사감보장학금
 7. 행정지원장학금
 8. 고려대학교 대학원 특별장학금
 9. 기탁장학금
 10. 복지장학금
 11. 소망장학금
 12. 학자금융자지원장학금
 13. 세종캠퍼스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장학금
 14. 대학발전 특별장학금
 15. 연구장려장학금

16. 교외장학금

제 6 조 (안암연계 및 졸업특대생장학금) ① 본교 대학에서 안암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본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에 진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1. 각 학위과정별 2년간(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면제.
2. 수업료 외에 2년간(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소정의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되 연 중 2, 8월분은 제외한다.

② 본교 학부 졸업특대생이 본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에 진학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14. 3. 1.>

③ 전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신청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외국인장학금) ① 본 대학원에 정원으로 입학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초청 외국인.
2. 중국 우수대학 법과대출신 재외국민 및 연변대학 출신 박사과정생.
3. 베트남 학생교류 지원 협정 학생.
4. 정부기관 산하 재외관련 단체 추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5. 정부기관(행자부, 외무부, 국방부 등) 추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6. 일반 외국인 및 재외국민.
7. 입학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단,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각 장학금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1, 2, 3, 4, 5호 : 관련기관의 추천공문을 제출서류로 대체.
2. 제6호 : 신입생은 장학금지급신청서(입학지원시 제출) 1부, 재학생은 소속 대학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각 1부.
3. 제7호 : 장학금지급신청서, 공인영어성적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입학지원시 제출)

③ 제1항의 각 장학금별 선발시기, 인원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시기 : 신입생은 12월 및 6월, 재학생은 2월 및 8월에 선발.
2. 선발인원 : 제1항 제1, 2, 3, 4, 5호는 관련 공문에 명시된 인원, 제6, 7호는 해당 대학장이 추천하는 인원.
3. 선발방법 : 제1항 제1, 2, 3, 4, 5호는 관련 공문을 근거로 대학원장이 선발, 제6, 7호는 해당 대학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선발. 단, 2004학년도 후기입시 이전 입학생들은 학기마다 해당 대학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선발.

④ 제1항의 각 장학금별 지급금액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금액 : 제1항 제1, 2, 3, 4, 5호는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지급, 제6호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5분의 3 지급. 단,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 제외), 정보통신대학, 간호대학(이상 2006년 신입생 적용), 사범대학(컴퓨터교육학과, 가정학과에 한하여 적용), 과학기술대학, 보건과학대학 입학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의 4분의 3 지급. 제7호는 입학당시 TOEFL(PBT) 577이상, TOEFL(CBT) 233이상, TOEFL(iBT) 90이상, 또는 TEPS 700이상, 또는 IELTS 7.0이상, 또는 S-TOPIK 6급이상이고, 최종 학교 졸업평균 4.0(4.5

만점) 또는 3.83(4.3만점) 또는 3.57(4.0만점) 또는 9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에게는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지급.

2. 지급기간 : 제1항 제1, 2, 3, 4, 5호는 4학기간(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간) 지급, 제6호의 2004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는 평점평균 3.5이상이면 4학기간(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간) 지급 및 기입학생은 학기마다 선발 지급. 단, 의과대학은 3.5이상 지급, 제7호는 평점평균 3.8이상 유지시 지급하며 2학기 연속 평점평균 3.8미만 3.0이상이면 장학금(수업료의 4분의 3) 지급(이후 3.8이상 유지시 수업료전액 지급), 연속 2학기 평점평균 3.0미만이면 장학금 중지(이후 3.0이상 유지시 장학금(수업료의 4분의 3) 지급, 장학금 중지후 평점평균이 3.8이상으로 올라도 수업료전액 장학금 수혜 불가)

제 8 조 (일반장학금) ① 재학생은 직전학기, 복학생은 휴학 전 마지막 학기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이 3.5 이상이며, 학비 조달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일반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일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소속 단과대학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9 조 (조교장학금) ① 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조교임용 규정에 의해 조교로 임용된 학생에게는 조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은 조교임용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조 (근로장학금) 대학원 학생자치활동 기구 및 행정부서에서 근로봉사를 제공하는 재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2014. 3. 1.>

제 11조 (안암학사사감보장학금) 안암학사에 사감보로 근무하는 대학원생에게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암학사사감보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12조 (행정지원장학금) 교내 행정부서에서 행정업무보조 업무를 한 학생에게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지원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2014. 3. 1.>

제 13조 (고려대학교 대학원 특별장학금) ① 본 장학금과 관련하여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원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학원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1. 박사과정 신입생을 위주로 하되, 국적과 관계없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2. 지급기간 및 금액은 대학원 장학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14조 (기탁 장학금) ① 본교에 기탁된 기금을 운영하여 그 과실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연구장학재단 장학금
2. 후생복지부 장학금
3. 백목장학금

② 지급인원, 선발방법, 지급금액 등은 각 장학금별 지급 규정(내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5조 (복직 장학금) ① 본교 재직중인 총장발령 교직원(명예교수, 계약직원, 촉탁직원 포함)과 법인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학비를 감면한다.

② 이 학비감면의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비보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6조 (소망장학금) 장애인 학생 중 가사가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에게는 입학금 전액 과 수업료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장학생은 매학기 선발한다.

- 제 17조 (학자금융자지원장학금) 학비조달이 곤란하여 정부지원 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신청학기 대출금의 6개월분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 제 18조 (세종캠퍼스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장학금) 본 장학금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19조 (대학발전 특별장학금) 본교 및 대학원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재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발전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2014. 3. 1.>
- 제 20조 (연구장려장학금) 연구실적이 우수한 수료연구생에게는 연구장려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2014. 3. 1.>
- 제 21조 (교외장학금) ① 교외 장학금이란 교외기관 및 교외인사가 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교외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단체
 2. 국가기관 및 그 산하 단체
 3. 일반기업체
 4. 기타 각종 기관
- ③ 교외 장학금의 신청, 제출서류, 선발방법, 지급인원,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외기관 및 교외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2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단, 제4조 제2항의 2단계BK21 장학금 이중수혜 허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단, 제7조 제4항 제1호의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제외), 정보통신대학, 간호대학 외국인장학금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과대학 제외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제17조, 제18조의 소망장학금과 학자금융자지원장학금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②항 삭제, 제5조 9호 장학금 종류 변경, 제14조 장학금 변경, 제20조 문구 수정)
2. (경과조치) 단, 제14조(공무원학비감면) ①항의 장학금 기존 수혜자는 2009년도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두며, 2010년 전면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8호 폐지, 제5조 9호 명칭 변경, 제5조 10호 명칭 변경, 제7조 ④항 내용 추가, 제13조 폐지, 제14조 명칭 변경)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④항 1호, 2호 외국인 장학금 지급조건 변경)
2.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15호, 제20조 신설, 제21조 조 번호 변경)
2.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14호, 15호, 제19조, 제20조 신설, 제4조, 제5조 7호, 제6조 2항, 제10조, 제12조 개정, 제5조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6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번호 변경)
2. (경과조치) ① 제6조 제1항의 의과대학 제외는 2006학년도 학부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제6조 제2항은 2006학년도 학부졸업자까지로 한다.
② 이 경과조치는 201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